

2025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[희망사다리 II유형] 시행계획(안)

2025. 2.

"계층사다리를 이어주는,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장학재단"

학 생 진 로 장 학 부



목 차

I. 사업 개요	1
1. 추진 목적	1
2. 사업 개요	1
II. '25년도 주요 개선 사항	2
1. 신규장학생 선발 쿼터제 신규 도입	2
2. 사업 운영 효율성 확보	2
3. 장학생 수혜 제한 기준 강화	2
4. 의무재직 심사 기준 강화	2
III. 세부 시행계획 및 추진 일정	3
1.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	3
2. 장학금 신청 및 선발	4
3. 장학생 의무사항 등	7
4. 사후관리	8
5. 추진 일정	9

[별첨] 2025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(희망사다리 II 유형)
업무처리기준

I 사업 개요

1 추진 목적

- “고교졸업 → 대학진학” 일변도로 인한 과잉학력 및 청년일자리 구조적 문제* 해소를 위해 「선취업 - 후학습」 활성화 필요

* 향후 10년간,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 초과공급 75만명 / 고졸 인력 초과수요 113만명 예상('17, '16-'26 중장기인력수급 전망), 고용노동부)

2 사업 개요

- 사업기간 : '25. 3월 ~ '25. 12월(신청기간 포함)

- 사업규모 : 51,794백만원

* 사업운영비 : 1,672백만원 별도(I·II 유형 공통)

- 지원대상 :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성적 및 재직 요건*을 충족한 학생

-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·편입하는 경우 별도 조건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

* 산업체 재직기간 2년 이상 (현재 중소·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)

- 지원금액 : 등록금 필수 경비 범위 내에서 기업 유형별 차등 지원

< 최근 5년간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지원 실적 >

구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4년
금액(백만원)	39,041	42,413	48,015	56,366	49,402
건수(건)	16,942	18,601	21,469	25,024	21,089
인원(명)	9,181	10,784	12,404	14,386	12,870

II '25년도 주요 개선 사항

1 신규장학생 선발 쿼터제 신규 도입

-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장학생 선발 추진
 - 계속장학생과 별도로 매년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신규장학생을 신규로 선발하여 장학금 지원

2 사업 운영 효율성 확보

- 사전 안내 및 일시지원 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의 예측가능성 및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

2024년	2025년
<신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규장학생 선발 예정 인원 사전 안내 제도 추진(재단 홈페이지 등) ■ 신규장학생 선발 이후 잔여예산 발생 시 일시지원 제도 운영 근거 마련
<신설>	

3 장학생 수혜 제한 기준 강화

-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I·II 유형 수혜자 중 장학금 반환 사유(학적변동, 의무종사 미이행 등)가 발생하였으나, 미반환으로 환수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타 유형 장학금 신청 제한 추진

4 의무재직 심사 기준 강화

- 의무재직 인정 제외 기업 확대 추진
 -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 또는 창업한 기업은 의무재직 인정 제외 추진

2024년	2025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부모기업 의무재직 인정 제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가족기업 의무재직 인정 제외 (부모기업, 배우자기업, 자녀기업 등)

- 의무재직 매출액 인정 기준 현행화
 - 2025년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62호, '25년 765,444원)을 현행화를 통한 의무재직 심사 기준 강화

Ⅲ 세부 시행계획 및 추진 일정

1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

- (지원대상)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, 성적 및 재직 요건을 충족한 자
 - 최종학력은 재단 보유 졸업자 데이터,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데이터,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유형을 기준으로 함
 -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
 -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·편입하는 경우 별도 조건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

【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대상 대학 】

- ◆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(대학), 제2호(산업대학), 제4호(전문대학), 제5호(원격대)에 해당하는 대학
- ◆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국립대법인, 과학기술원, 전통문화대, 한국농수산대, 한국에너지공과대학
 - ※ 단,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재정지원 제한 II 유형 대학은 지원 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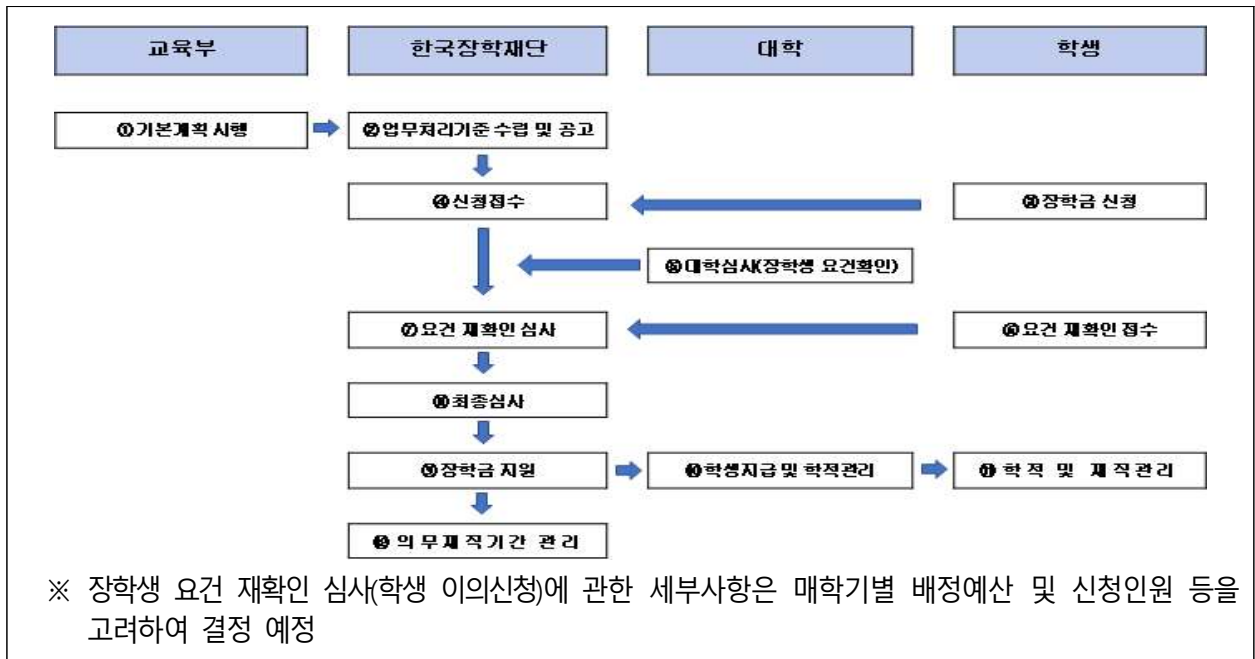
- (재직요건) 선발 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,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
 - 다만, 심사 개시일 기준 당시 중소·중견기업 재직 중인 자는 산업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
 - * 재직기간 산정에 관한 상세기준은 「업무처리기준」 참고
 - 전문학사 취득자의 재직요건은 별도 기준 적용

- (지원내용)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현 재직기업 유형별 차등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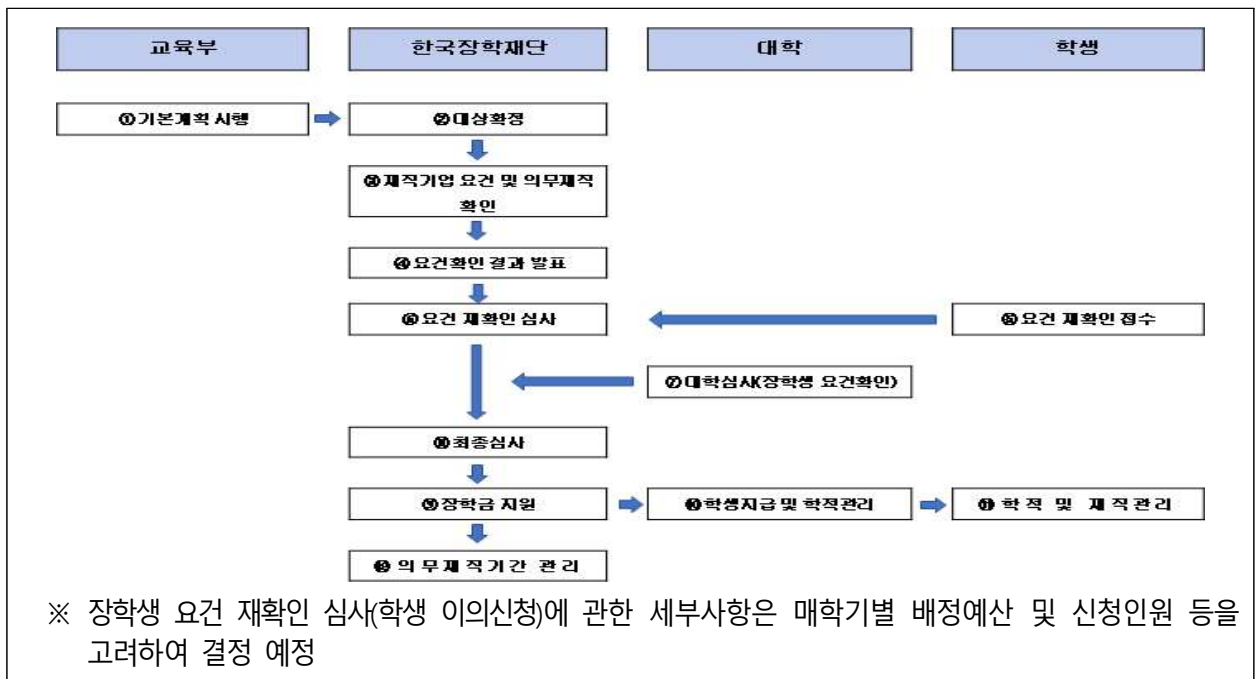
기업유형	중소·중견기업	대기업, 비영리법인, 비사업자
지원금액	등록금(필수경비)* 전액	등록금(필수경비)* 50%

* 필수경비 : 장학금 신청자의 등록금 정보는 소속대학 수납원장 업로드 금액을 기준으로 함

<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(희망사다리 II 유형) 운영 절차 (신규장학생) >



<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(희망사다리 II 유형) 운영 절차 (계속장학생) >



2 장학금 신청 및 선발

- (신청)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 신청 접수
 - 계속 장학생은 신청절차를 생략하고,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에서 요건충족 여부 확인

- (선발) 학기별 신청자 중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재단이 직접 선발
 - 신규장학생 선발 이후 잔여예산 발생 시 일시지원 제도 운영 가능
- (신규장학생) 최종 학력이 고졸이며,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(신·편입생 포함)으로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중인 자
 - 신규장학생은 연령, 재직기관, 출신 고교,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하며,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매년 일정 규모 이상*의 장학생 선발 추진

* 매년 사업 예산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 별도 공지(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등)

<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배점표 >

항목(배점)		세부 배점
1	연령 (30점)	▶ 청년 : 30점(34세 이하) ▶ 비청년 : 20점(35세), 19점(36세) ... 1점(54세 이상)
2	재직기관 (40점)	▶ 중소·중견기업 : 40점 ▶ 비영리기관 : 20점, ▶ 대기업 : 10점
3	출신고교 (25점)	▶ 직업계고 : 25점, ▶ 위탁교육과정 수료 : 20점 ▶ 일반고 등 : 15점, ▶ 기학사(전문학사학위 보유자): 10점
4	기업 재직기간 (5점)	6년 이상 : 5점, 5년 이상 : 4점, 4년 이상 : 3점, 3년 이상 : 2점, 2년 이상 : 1점, 2년 미만 : 0점

<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배점 산정 기준 >

구분	선발 배점 산정 기준
동점자 처리 기준	▶ [1단계] 개별 항목별 고득점 자 - 산정 순서 : 연령 → 재직기관 → 출신고교 → 재직 기간 ▶ [2단계] 생년월일 기준으로 연소자 우선 ▶ [3단계] 신청일시가 빠른 자
청년 예외 인정	▶ 만 3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▶ 출산 여성(자녀 1명당 현재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)
출신고교 확인	▶ 직업계고 : 졸업증명서 - 생년월일, 학교, 학과, 이수교과로 직업계고 여부 확인 - 졸업증명서로 졸업 증빙이 어려운 경우, 생활기록부 추가 제출 ▶ 일반계고 전문교육 위탁과정 : 수료증 - 수료증으로 위탁과정 수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,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추가 제출

<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항목별 심사기준 >

심사항목		심사요건	
1	학적	▶ 해당 학기 재학생(신.편입생 포함)	
2	성적	▶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(신.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)	
3	최종학력	▶ 고등학교 졸업자 (다만,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.편입하는 경우 별도 조건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허용)	
4	최대 수혜횟수	▶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을 포함한 재단 장학금 누적 수혜횟수는 학제 별 최대 지원 횟수를 초과할 수 없음	
5	매출액	▶ 6개월간 매출액 평균이 당해 연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(개인사업자의 경우만 적용.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765,444원)	
6	장학생 선발 전 재직기간*	고등학교 졸업자	▶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 - 중소·중견기업 재직 중인 자는 1년 이상 ▶ 재직 기간은 심사 개시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기간(현 재직 및 이전 재직) 및 군 복무기간을 합산 -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(180일) 이상인 자에 한해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
		전문학사 취득자	▶ 선발 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 이면서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▶ 재직 기간은 심사개시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 기간만 인정 -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도 실제 근무 기간만 인정 하여 각각 산정
7	현 재직요건**	▶ 심사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의 규모 판단 ▶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***	

*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, 전체 근무 기간(근무 개시일 ~ 근무 종료일)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

** 고용정보 연계로 재직 기업이 복수로 확인될 경우, 요건 재심사 진행 (장학생이 제출한 재직 증빙 서류로 재심사하여 재직 인정 기업 판단)

*** 가족기업(재직 인정제외 기업) 재직 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대조

- (계속장학생) 자격 상실 기준*에 해당하지 않으면, 계속장학생 자격 유지
- 학적 : 계속장학생 심사 학기 재학생
 - 성적 :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
 - 최대 수혜횟수 : 학생별 수혜횟수는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(근로장학금 등 생활비성 장학금은 제외)

구분	2년제	3년제	4년제	5년제	6년제
학제별 최대 수혜횟수	4회	6회	8회	10회	12회

- 현 재직기업
 - 심사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의 규모 판단
 -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
 - 의무재직 이행
 - 장학금 수혜 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(이행 기한 만료일 이내)에 해당 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한 자
- * 자격상실 기준 : 학적, 성적, 현 재직요건 미충족 등

3 장학생 의무사항 등

- (학적유지) 학기 중 재학생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, 장학생 자격 박탈 및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
- (의무재직) 장학금 수혜자는 수혜 후 재직기업에 따라 일정 기간 재직해야 하며, 의무재직기간을 미충족하는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및 장학금 반환 또는 환수
- 의무재직기간은 수혜 학기당 4개월로 하며, 학생은 수혜 학기 심사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직 대상 기업에 재직해야 함
- (제한사항) 장학금 수혜 후 의무재직 이행기간(1년) 이내 의무재직 미이행자는 장학금 심사 탈락 및 계속장학생 자격을 상실하며, 잔여 재직 의무는 반드시 완료해야 함

- (현장점검) 대학 현장방문을 통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운영관리 적정성 점검
 - 장학생 선발, 학적변동 관리, 우선감면, 예산집행(지급·반환 관리 등) 등 종합적 점검

4 사후관리

- (장학금 반환) 업무처리기준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수혜약정서에서 정한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장학생이 자발적으로 반환 금액을 재단에 상환

〈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반환 사유 및 반환 금액 〉

반환 사유	반환 금액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장학생이 제적·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였거나 휴학을 한 경우 ▶ 심사정보 오입력·허위입력으로 장학생이 오선발된 경우 	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장학금 포기 신청을 하는 경우 ▶ 학자금 중복지원, 감독기관의 반환 청구, 대학의 장학금 부당 사용 등이 발생한 경우 	해당 금액 전액 반환

- (장학금 환수)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해당 금액을 회수
 - 의무재직 유예기간(2년)이 만료되었음에도 반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
 - 장학금 환수 약정 기간(1년)이 종료된 경우
 -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른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(면제) 장학금 수혜 이후 사망, 장애, 질병으로 장학생의 의무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, 장학금 반환(환수) 면제 가능

5 추진 일정

□ (1학기) 신청접수('25. 2~3월) 및 장학금 심사·지급('25. 3월~5월)

□ (2학기) 신청접수('25. 8~9월) 및 장학금 심사·지급('25. 9월~11월)

일정 내용	1/4분기			2/4분기			3/4분기			4/4분기		
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- 사업계획 수립	○											
- 장학생 모집		○	○					○	○			
- 장학생 심사 / 장학금 지급			○	○	○				○	○	○	

※ 상기 일정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